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뉴저지 주법에 따른 주거지 성희롱 금지 규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주거지에서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가지 형태인 성희롱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곳(공공 주택, 일반 아파트, 또는 콘도 포함)이나 집세 지불 방법(예를 들어, 집세 지원 바우처 사용)과 관계없이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 2 성희롱에는 외설적인 언어나 모욕적인 표현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같은 신체적 성희롱, 또는 포르노와 같은 사진, 만화, 또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각적 성희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불법적 성희롱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이 해당합니다: “대가성(quid pro quo)” 성희롱 및 적대적 환경 조성. 대가성 성희롱은 특정한 혜택을 조건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성적 행위를 거부할 경우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로는 건물 관리자가 세입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성행위나 성적요구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적대적 환경은 세입자에 대한 성희롱이 매우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또는 모욕적인 주거 환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체 또는 의복에 대해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4 주거 제공자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희롱의 가해자가 주거 제공자의 직원이나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 또는 일부 상황에서는 이웃 세입자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5 주거 제공자는 성희롱에 반항하거나, 성희롱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세입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 제공자는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